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5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강준현 · 김현정 · 이광희
문대림 · 신장식 · 위성곤
진성준 · 윤준병 · 김남근
박상혁 · 박범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9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u>4명</u> 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11명</u> ----- ----- <u>5명</u> ----- ----. ② ~ ④ (현행과 같음)